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1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안 제명)

-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다.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구성위원 수 변경(안 제2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라. 위원회 소관사무에 건강피해조사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 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신설(안 제5조)

마. 명칭변경(안 제8조, 제9조)

- 관계전문가 ⇒ 전문위원, 심사관 ⇒ 조사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별균형 고려

- 반영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안 제5조제2항)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최왕택 (☎ 2133-4253)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 재정위원회 · 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 재정
위원회 ·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 재정위원회 · 중재위원회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
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
위원회 · 재정위원회 · 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별표]

수수료(제10조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신청	5,000원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에는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유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집단 건강피해 청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설치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최왕택(☎ 2133-4253)